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0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서영석 · 박선원 · 윤준병

이수진 · 이해민 · 김남희

노종면 · 최혁진 · 박지원

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식품등을 조리·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가맹본부”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②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 방법과 식품위생관리 기술·정보의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5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44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01조제3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식품등을 조리·판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가맹본부”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가맹점사업자”라 한다)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점사업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p>②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 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

③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 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 방법과 식품위생관리 기술·정보의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